

# 규제 파도를 넘어야 할 신규 NFT 사업자를 위한 법적 지침서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shj@lawren.co.kr](mailto:shj@lawren.co.kr)

T. 02-6956-3513

F. 02-6956-3513

M. 010-2031-3541

### 학 력

2002  
2009  
2015  
2017

경기과학고등학교 조기수료  
KAIST 졸업(수리과학/경영과학 복수전공)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제1기, IT·Finance & Law) 특별연구과정 수료

### 경 력

2015 - 2020  
2019 - 2020  
2020 -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증권금융분쟁그룹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디지털테크놀로지팀 변호사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청년변호사회 발기인 및 법제이사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 자 격

2015  
2016  
2008  
2020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4회)  
한국 변리사 등록  
한국금융투자협회 일반운용전문인력(Registered Fund Manag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금융 및 IT 전문변호사

### 저작 및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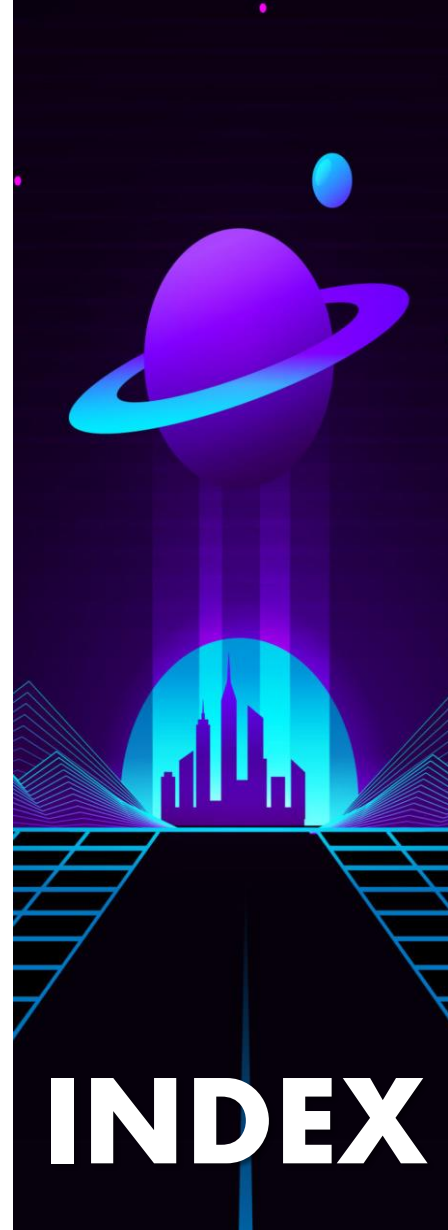
2018  
2021  
  
2021

디센터유니버시티 블록체인 입문과정 1기 및 2기 법률분야 강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간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보고서’ 공동집필(법/제도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블록체인으로 혁신하는 디지털 경제 정책 컨퍼런스 발표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FIRM RENAIS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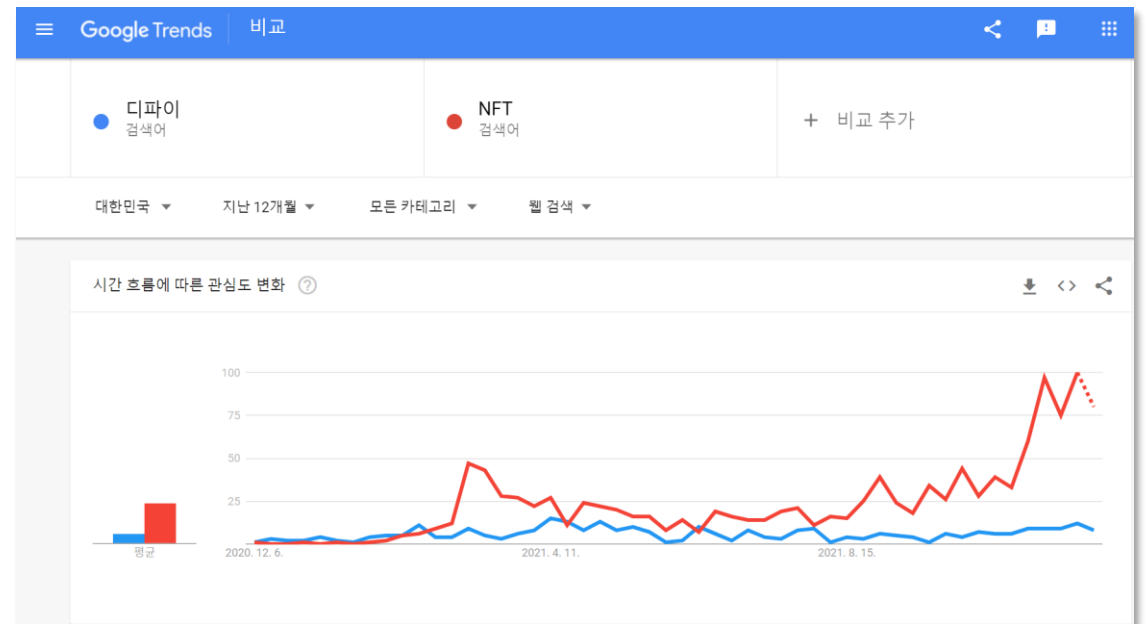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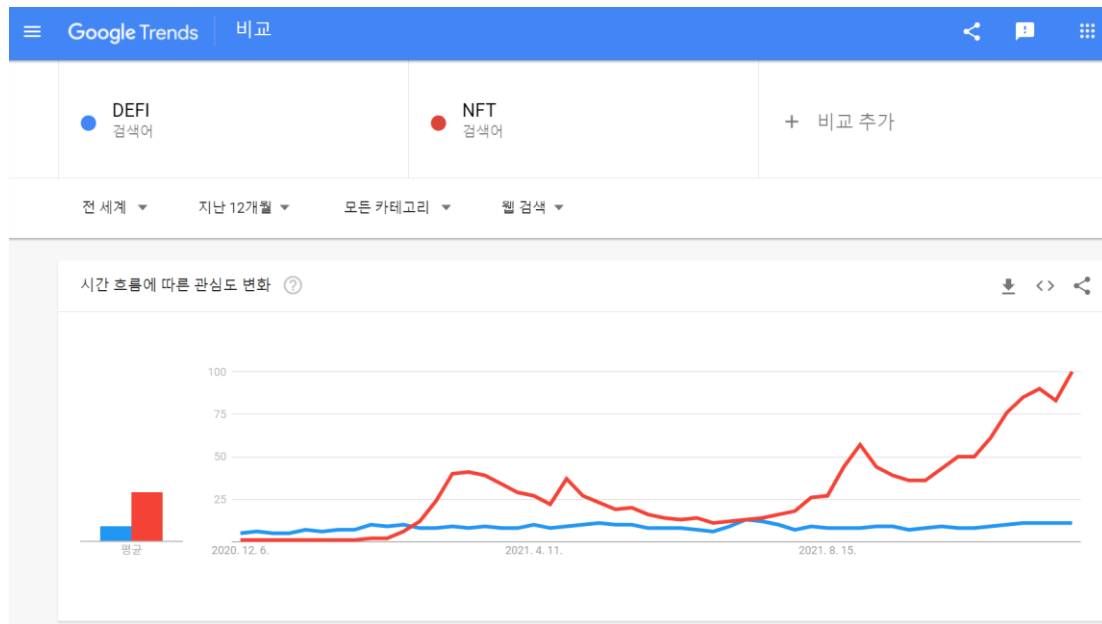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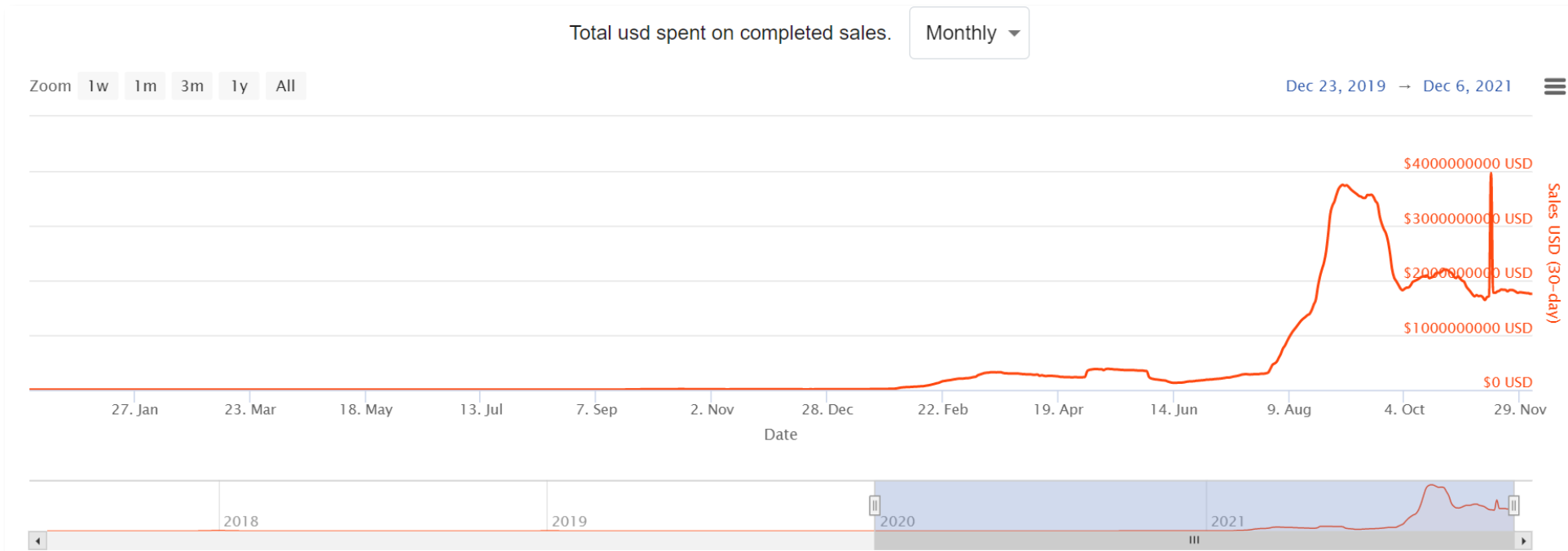


- | 01** 들어가며
- | 02** NFT 유형 및 그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 03** NFT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 04**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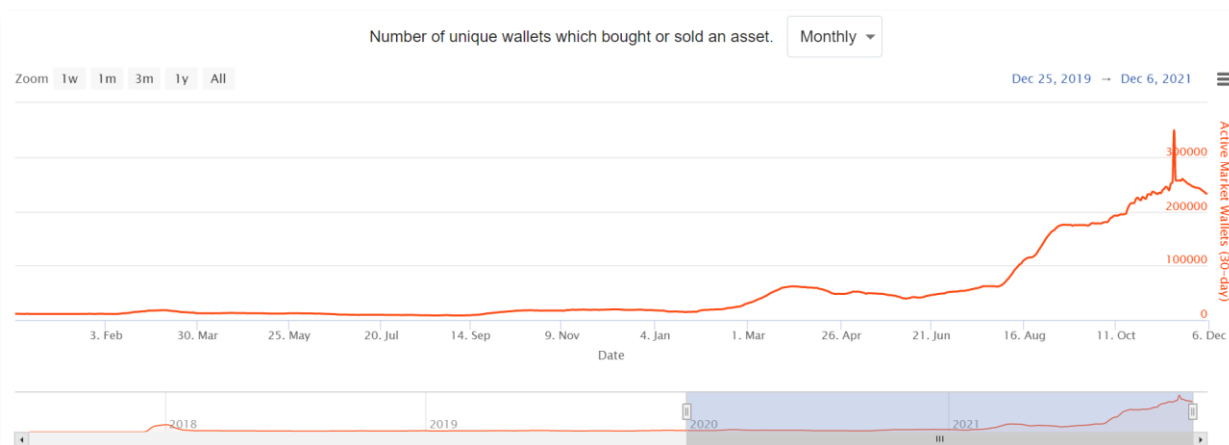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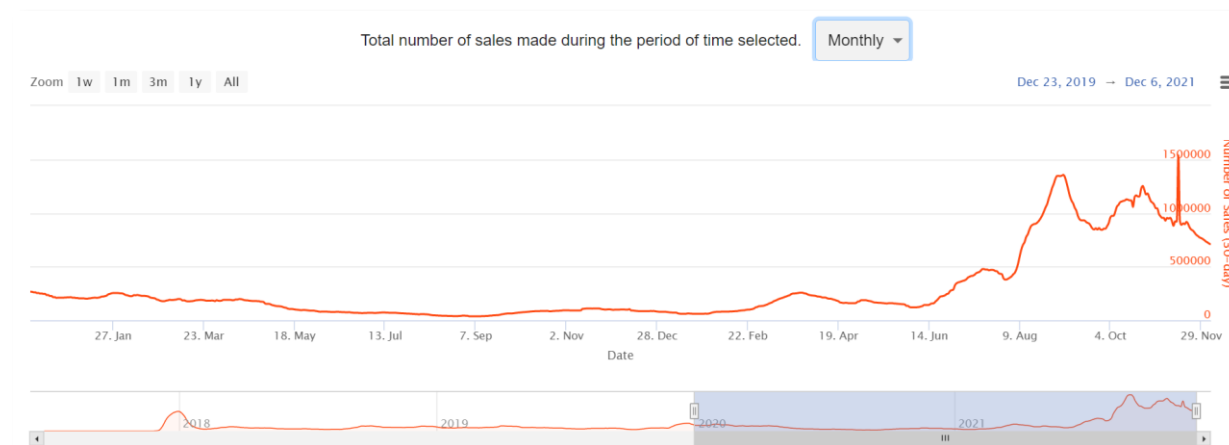




REFERENCE: Nonfungible.com



REFERENCE: Nonfungible.com



REFERENCE: Nonfungible.com

제391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1년11월23일(화)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90)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47)
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0)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71)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2)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19)
7. 가상자산법안(의안번호 2109935)
8. 가상자산법 발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190)
9.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312)
10.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459)
1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1771)
12. 가상자산산업기초법안(의안번호 2113016)
13. 가상자산산업 발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113168)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1)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7)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4)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518)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1)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1)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47)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2)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01)
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62)
2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1)
2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20)
26. 보편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41)
27. 보편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2)
28. 보편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47)
29. 보편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14)
30. 보편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37)
31. 공문신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2897)
32.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42)
3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174)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 본 자료는 정무위 법안소위의 내부토의를 위한 확정되지 않은 내용임

I. 기본 원칙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되,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 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여 규제탄력성 확보 필요

1. 동법 제정 목적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두되, 이용자 보호와 불복제인산업 진흥과 균형감도 유지
2.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간 균형점 모색을 위해 규제 유연성이 있는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상세내용은 하위규정 위임 \* 법률에서는 이용자 보호 원칙과 필요 최소한 규제만 두고 하위규정 구체화 (예: 백서 등 발행행사 관련 상세내용, 가상자산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등)
3.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당국은 시장 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
4. 불공정행위는 자율적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되, 형사적 제재와 함께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실효성있게 환수할 수 있는 범법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
5. 국제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주요국의 입법논의가 진행 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령을 보완·개정

II. 시급한 단기대응 과제

1 가상자산 정의

	내 용
가상자산 정의	현행 특금법+α ⇒ 글로벌 동향과 특금법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타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대상을 가상자산의 개념에서 배제 (예 선불증전금, CBDC 등)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전자화폐 등 제외)
증권형토큰	원칙적으로 동법 적용하되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를 우선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
스테이블코인	동법 적용(발행자·증거자산 예치·운용, 유동성 등 규제장치 마련)
DeFi	業으로 영위하는 경우 규율(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 등)
NFT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동법을 적용

\* (MICAR) 증권토큰 제외(§2), DeFi 관련 이자금지 금지(§36,§45)

기업 금융

[단독]국회, 금융위 가상자산 규제 초안 반려...법안 논의 숨고르기

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24 09:20

국회가 금융위원회에서 제출한 가상자산 규제 초안을 반려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입법 방향 등에 동의가 어렵다며 법률안 보고서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살을 타던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무위 "금융위 보고서, 내용 부실" 지적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가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완을 지시했다. 여야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립하다 보완된 내용으로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로 법안 논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법 구원이나 금융연구원 등과 협의해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입법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족했다"며 "법안 프레임 없이 직접 조항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자료 통해 소위 업권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는 글로벌 동향{특히, EU의 MiCA(R)}과 특정금융정보법 감안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현행 특금법 + a), NFT의 경우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면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Brussels, 24.9.2020  
 COM(2020) 593 final  
 2020/0265(COD)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Text with EEA relevance)

{SEC(2020) 306 final} - {SWD(2020) 380 final} - {SWD(2020) 381 final}

- (8) Any legislation adopted in the field of crypto-assets should be specific, future-proof and be able to keep pace with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Crypto-assets’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hould therefore be defined as widely as possible to capture all types of crypto-assets which currently fall outside the scope of Union legislation on financial services. Such legislation should also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y definition of ‘crypto-assets’ should therefore correspond to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set out in the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sup>34</sup>. For the same reason, any list of crypto-asset services should also encompass virtual asset services that are likely to raise money-laundering concerns and that are identified as such by the FATF.
- (15) In order to ensure a proportionate approach, the requirements to draw up and publish a crypto-asset white paper should not apply to offers of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money tokens, that are offered for free, or offers of crypto-assets that are exclusively offered to qualified investors as defined in Article 2, point (e), of Regulation (EU) 2017/11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sup>37</sup> and can be exclusively held by such qualified investors, or that, per Member State, are made to a small number of persons, or that are unique and not fungible with other crypto-assets.

*Article 4*

*Offers of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money tokens, to the public, and admission of such crypto-assets to trading on a trading platform for crypto-assets*

1. No issuer of crypto-assets, other than asset-referenced tokens or e-money tokens, shall, in the Union, offer such crypto-assets to the public, or seek an admission of such crypto-assets to trading on a trading platform for crypto-assets, unless that issuer:
  - (a) is a legal entity;
  - (b) has drafted a crypto-asset white paper in respect of those crypto-asse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 (c) has notified that crypto-asset white pap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 (d) has published the crypto-asset white pap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 (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laid down in Article 13.
2. Paragraph 1, points (b) to (d) shall not apply where:
  - (a) the crypto-assets are offered for free;
  - (b) the crypto-assets are automatically created through mining as a reward for the maintenance of the DLT or the validation of transactions;
  - (c) the crypto-assets are unique and not fungible with other crypto-assets;
  - (d) the crypto-assets are offered to fewer than 150 natural or legal persons per Member State where such persons are acting on their own account;
  - (e) over a period of 12 months, the total consideration of an offer to the public of crypto-assets in the Union does not exceed EUR 1 000 000, or the equivalent amount in another currency or in crypto-assets;
  - (f) the offer to the public of the crypto-assets is solely addressed to qualified investors and the crypto-assets can only be held by such qualified investors.

EU측 가상자산 패키지법안(MiCA)상, NFT(Unique & Not Fungible crypto-assets)는 발행주체가 법인이면 충분, 백서 발행 등 의무 면제  
 → 각기 고유 NFT마다 백서 발행 어렵고, 공모 아닌 P2P 방식 거래 대부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상 적절, But 소위 Fractionalized NFT(F-NFTs)의 경우는?  
 다만, 최근 추가된 주석(recitals)을 통해 위 법안상 암호자산은 FATF 권고안에서 제시된 가상자산(VAs)의 정의에 부합해야 함 명시





24 | UPDATED GUIDANCE: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53. Digital assets that are unique, rather than interchangeable, and that are in practice used as collectibles rather than as 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 can be referred to as a non-fungible tokens (NFT) or crypto-collectibles. Such asset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to be VAs under the FATF defini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NFT and its function in practice and not what terminology or marketing terms are used. This is because the FATF Standards may cover them, regardless of the terminology. Some NFTs that on their face do not appear to constitute VAs may fall under the VA definition if they are to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in practice. Other NFT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other financial assets already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Such assets a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FATF definition of VA, but would be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as that type of financial asset.<sup>17</sup> Given that the VA space is rapidly evolving, the functional approach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NFTs and other similar digital assets. Countr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FATF Standards to NFTs on a case-by-case basis.

○금융위원회부위원장 도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권은 [증권성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자본시장법으로 가면 사실은 증권발행신고서를 내야 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증권발행신고서는 금감원에서 일일이 다 스크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우리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증권이라고 주장을 해서 들어와 주면 저희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은 최소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밀착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증권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증권성이 있는데 증권성이 없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규율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증권발행신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그래서 발행 규제를 회피한, 그래서 과징금이라든가 형사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자본법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정무위 기존 영역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FATF는 2021. 10. 발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가이드라인 통해, Unique(rather than interchangeable), 실생활에서 결제나 투자 수단이 아닌 수집품과 같이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이 NFT로 불린다면, 이는 통상 FATF가 규정하는 가상자산(VAs) 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다만, 용어 무관 결제나 투자 목적 사용되는 경우 VA 해당될 수 있고, 아예 FATF 권고안상 금융자산(Ex. Security)에 해당될 수도 있음

→ 결국, 구체적인 사례(Case-by-case basis)마다 FATF 권고안의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

→ 향후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역시 실제 기능(Purposes in Practice)에 주목, 자본시장법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 의율 사례 다수 발생 예상

## 2

# NFT 유형 및 그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01 NFT 유형의 구분 기준 = Purpose in Practice

## MESSARI

### NFT Categ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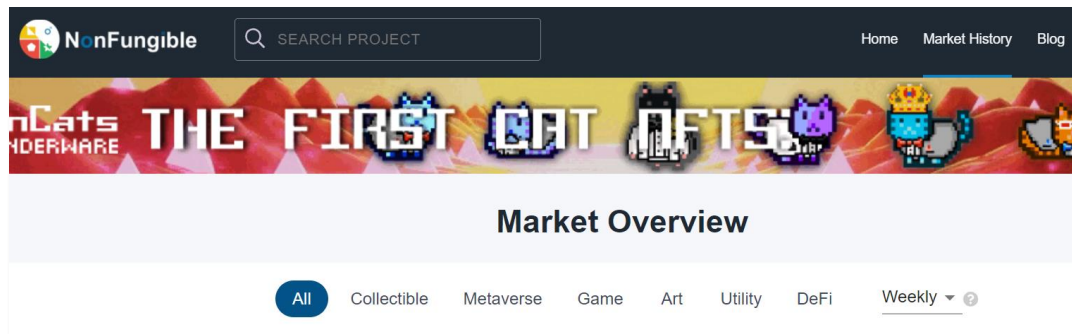
Examples of NFTs by some existing categories

Trading Cards & Collectibles	Art	Gaming	Content & Media	Miscellaneous
CryptoPunks	SuperRare	Axie Infinity	\$ESSAY Blogs	Nori Carbon Credits
Hashmasks	Art Blocks	My Crypto Heroes	EulerBeats	POAP attendance badge
NBA Top Shots	Foundation	F1 Delta Time	Kings of Leon Album	Urbit ID
Sorare	Async Art	Cometh	Nyan Cat Gif	ENS Domains
Gods Unchained	Known Origin	Street Fighter	Tweets & Social Media	FOAM Location Token

As of Mar. 9, 2020  
Source: Messari

Note: Some NFTs can be in multiple categories and this categorization is purposely broad and not exhaustive

REFERENCE: Messari



REFERENCE: NonFungible.com

## 컬렉터블(Collectibles)

- 밈(Meme), 아바타(Avatars) / 트레이딩 카드(Trading Cards) 등 대표적
- Bored Ape Yacht Club, CryptoPunks, NBA Top Shot



## 아트 앤 미디어(Art and Media)

- 예술가의 성향, 표현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 가능, 기존 예술업계 진출 및 연계 용이
- Beeple, Pak, SuperRare, Twe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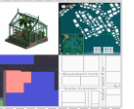
## 게임(Games)

- 블록체인 기반 게임상에서의 수집의 대상 및 경쟁수단, Play 2 Earn(P2E)
- Axie Infinity, Rumble Kong League, F1 Delta Time, Gods Unchained



## 메타버스(Metaverse)

- 가상세계(Virtual World), 여러 유형 NFT 결합 가능해 잠재력 큰 분야(Ready Player One)
- The Sandbox, Decentraland, CryptoVoxels, Somnium Space 등



## 유틸리티(Utility)

- 액세스(Access)형, 보유자에게 독점적인 효용 내지 경험 제공
- Ethereum Name Service, VeeFriends, 각종 멤버십/참여권 등 형태로 출현 예상



## 02 NFT 유형별 직면 가능한 법적 리스크 (1)

### 컬렉터블(Collectibles)

- 단순한 수집 대상으로서의 NFT의 경우 FATF 권고안상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음
- 가상자산 등 관련 FATF의 최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명시적인 예외규정 도입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위 유형의 NFT 및 관련 사업자의 경우 단기 및 중기적 관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특별히 상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컬렉터블 NFT임에도 국내 NFT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거래되어 시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 투자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내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취급, 관련 규제 적용될 여지 없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 매우 희박

- 가상자산으로서 과세 가능성 낮고, 열거주의 취하고 있는 (개인)소득세법상 다른 항목으로도 과세 이뤄질 가능성은 당분간 낮아 보임

### 유틸리티(Utility)

- 독자적인 효용 가치 부여될 수 있고 결제 및 투자 수단 기능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FAFT의 권고안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이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가능성 낮음
- 따라서, 위 유형의 NFT 및 관련 사업자 역시 단기 및 중기적 관점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특별히 상정하기 어려움.



## 02 NFT 유형별 직면 가능한 법적 리스크 (2)

### 게임(Games) / 메타버스(Metaverse)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 제외.
- 그런데,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이 제외(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등(동조 제1의2호 가. 및 나.목 등).
- 이는 게임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 결과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 통해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 위 법상 게임물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기기 및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지,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므로 게임산업법 위반 아님(위 대법원 2009도12117 판결)}. 다만, 게임산업법상 불법 게임물 해당하여 관련 환전행위는 위 위반으로 처벌(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다만, 게임산업법으로 처벌 불가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처벌(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결국, 블록체인 기반 P2E형 게임 내지 관련 NFT의 경우 **특정 게임상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그 외부로 나와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특정금융정보법 및 게임산업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제에서 제외 가능.**
- 메타버스 관련 NFT 중 상당 수(The Sandbox, Decentraland) 역시 사해행위규제법 의율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위 예외적인 형태로 서비스 설계하지 않는 한 유사 서비스 및 관련 NFT 출시하여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없는 상황.**

## 02 NFT 유형별 직면 가능한 법적 리스크 (3)

### 아트 앤 미디어(Art and Media)

- 흥미 위주 밈이 아닌 예술적 가치와 심미성 등이 개입될 수 있고 창작자의 개성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어 잠재성 큰 분야
- 소유권과 분리, 독자적 가치 지닌 저작권 적용되는 예술 분야, 특히 **미술품 등 대체불가능한 원본 중심 시장에 NFT 도입 시도 활발**
- NFT는 메타데이터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NFT 자체 거래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희박하나 무권리자의 민팅시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NFT에 연결된 원본 데이터의 상실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IPFS 등을 활용하자는 논의는 이미 상당 수준 진척
- 그 밖에, NFT 소유자의 전시권(예컨대, 메타버스상?) 인정 여부, 추급권의 도입 여부, 저작권법상 배포권 관련 권리소진 규정 적용 가부, 플랫폼상 저작권 침해 NFT 아트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및 제한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이 유형 NFT와 관련한 상당 부분 법적 쟁점은 저작물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실무례(판례), 관행 등이 적용 /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관련 사업자로서는 **저작권법상 기존 논의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사업 설계하고 제반 계약(예컨대, 저작권자로부터의 민팅 등 저작물 이용 허락 등) 체결, 확보할 필요** 있음.
- 한편, 미술품 등 분야에서 논의되던 소위 분할 소유권 개념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 구현된 사례 다수 출시 중(예: Tessa, Artii 등)  
→ F-NFTs는 Uniqueness가 인정되기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요함

3

NFT 사업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01 NFT 사업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콜렉터블, 유틸리티형 NFT 사업자

- **단순 수집형 / 유틸리티형 NFT 사업자의 경우 FATF 권고안 및 이를 반영할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 낮음.**
- 다만, 위와 같은 NFT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경우 거래가 지나치게 빈번하게 이루어져 시가가 형성된 것으로 오인되거나 게시 중인 NFT들이 투자 수단으로 변질, 운영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  
→ 자전거래 금지 / 매수 후 매도 위해 필요한 적정 기간 부여 / 거래 가격 인위적 개입 시 지원 종료 등
- 환전 기능 제공하거나 플랫폼이 NFT를 매수해주고 원화 등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러한 기능은 배제해야.
- (근래 출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전당포와 유사하게) NFT를 담보로 한 연계대출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요함(모든 유형의 NFT 동일).



## 02 NFT 사업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게임형 / 메타버스형 NFT 사업자

- NFT가 게임 외부로 이전될 수 있거나 게임 플랫폼상 환전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이뤄질 가능성 높음
-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소위 P2E형 게임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상 보상으로 주어지는 NFT가 게임 내부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외부로는 이전될 수 없도록 설계하고, 환전 기능 역시 철저히 배제해야 함  
→ 그 경우 기존의 게임물과 전혀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의미로서의 P2E 게임으로 보기 어려움
- 결국, 제대로 된 P2E 게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기반을 두고 영업을 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구비해 두어야 함  
(예컨대, 국내 주체의 해외 설립 재단 등을 통한 ICO처럼)
- 그러나, 그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해외 설립 재단 등 주체와의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 발생한 수익의 국내 환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이슈 및 사실상 국내 주체에 의한 영업 인정에 따른 게임산업법 등 위반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추천하기 어렵고, 그럼에도 부득이 그러한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적 리스크 최소화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 필수

# 03 NFT 사업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아트 앤 미디어형 NFT 관련 사업자 (1)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문제  
→ 사업모델 설계 시부터 이용약관, 이용자들이 거래 시 확인, 동의해야 할 내용,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등 관련 계약 마련해 둘 필요 있음.
-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면책 규정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 견해의 대립 있으므로 실무례 집적 이전까지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이용약관에 공정한 범위 내에서 NFT 소유자의 권리 및 회사의 면책규정 상세히 규정해두는 것 바람직(cf. Upbit NFT)

**UPbit** 거래소 입출금 투자내역 코인동향 NFT **N** 고객센터 02시 57분 로그아웃 MY

**제 3조 (NFT 소유자의 권리)**

- 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에 따라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이 부여됩니다. NFT는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유 내지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NFT 소유자의 권리"는 NFT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NFT 소유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NFT를 보유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NFT를 이전한 경우, NFT를 양도한 회원은 "NFT 소유자의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 및/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NFT를 이전받은 자에게는 "NFT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제안 유의사항 및 NFT 내용과 권리**

- 구매 가격 제안에 필요한 금액은 제안가에 수수료를 더한 총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구매 가격 제안은 제안 시점으로부터 3일간 유효합니다. 제안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제안은 자동 취소됩니다.
- 구매 가격 제안이 완료되면 해당 금액은 업비트 내 거래 가능 금액에서 제외되며, 제안가가 판매가와 같거나 판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 판매가에 거래가 바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가격 제안을 수락하면 업비트 계좌 내 계좌에서 원화(KRW)가 차감되어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제안 취소는 거래가 체결 되기 이전까지 'My NFT > Price Offe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상품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포함)이 발생한 경우 해당 NFT에 대한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본 NFT 소유자는 NFT와 연계된 "디지털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할 수 있는 권리와 NFT 입출금,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NFT에는 해당 NFT에 연계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저작권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2차 저작물의 생성이나 수익 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침해할 경우 NFT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원작자와의 저작권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NFT 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이를 보유할 실익이 없어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될 우려 있으므로 적절한 조율 필요.

## 03 NFT 사업 유형별 법적 리스크 최적화 방안 – 아트 앤 미디어형 NFT 관련 사업자 (2)

- 최근 미술품 등 시장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는 소위 분할/ 구분소유권 거래 플랫폼의 경우, 미술품 등 민팅하여 NFT(ERC-721) 발행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 표상하는 별도 토큰(ERC-20) 발행해 지급하는 경우(F-NFTs), 그러한 토큰은 FATF 권고안 따른 NFT 개념 포함되기 어렵고,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높으므로 주의
- 한편, 위와 같은 플랫폼 운영 주체들의 경우 NFT 자체가 기반 미술품 등 소유권 그 자체를 표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많음. 그러나, 그런 성격의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NFT 이전만으로 소유권 온전히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분쟁 야기될 가능성도 상당.
- 이와 관련, 상당 수 사업주체들은 관련 규제 적용을 회피 위해 최초 매수자들간 공유계약(규약) 및 이후 매수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플랫폼상 활용되는 NFT는 소유권 이전 여부를 플랫폼에 통지하는 수단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 참고(Tessa, Artii 등).
- 다만, 위와 같은 사업 주체들의 경우에도 **분할 소유권의 매수 후 일정 시점 경과 또는 특정 조건 달성 시 원본을 매각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경우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부여된 NFT 등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오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면밀한 법적 검토 필요**

4

마치며



# 01 결론

- 2021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NFT는 그 활용 목적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으로 컬렉터블, 유틸리티, 아트 앤 미디어, 게임, 메타버스 등으로 구분 가능.
- 컬렉터블 / 유틸리티형 NFT의 경우, 단순 수집품과 유사하거나 독자적인 효용 가치를 상정 가능한 것으로서 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특정금융정보법 내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 반면, 게임형/메타버스형 NFT의 경우,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관련 규정상 게임 외부로 이전되거나 환전 기능이 제공되는 소위 P2E 게임에서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당분간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는 힘들 듯
- 한편,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아트 앤 미디어형 NFT의 경우, 기존 저작권법상 규정 및 실무례, 관행 등이 상당 부분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분할 소유권 거래 플랫폼의 경우 상당 수는 그와 관련 발행된 NFT 등 가상자산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하거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발행인 의무 적용 가능성 있어 보이므로 주의(향후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 다수 발생 우려)

## 02 제언



VS



- 단기적으로는 적용가능한 법령 및 실무례 등이 비교적 충분한 미술품 등 지적재산권 관련 NFT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게임/메타버스형 NFT일 듯
- 게임산업법(문체부) 및 사행행위규제법(경찰청)의 경우 주무부처상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 어려우나,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잠정적 허용은 가능해 보임
  - 부산 등 블록체인 특구에서 실증사례 연구를 통해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P2E 플랫폼상 부여된 NFT를 외부의 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역화폐 등에 한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시도해볼 수도



# END OF DOCUMENT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정수호  
shj@lawren.co.kr



법무법인 르네상스  
LAWFIRM RENAISSANCE